

第24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2004年3月2日(火) 午前10時

議事日程(第11次本會議)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건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
2.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계속)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5. 赦免法中改正法律案
6.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8.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9.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11.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12.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
14.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15.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1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계속)
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2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2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22.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23.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
2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25. 放送法中改正法律案
2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2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28.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
29.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3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33. 政黨法中改正法律案
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5.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附議된案件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건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 4
2.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 제출)(계속) 29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2
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 의원 발의)(조재환 의원 외 145인 발의) 32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연숙·이미경·김정숙·임진출·손희정·김방림·허운나·김화중·추미애·김정천·김희선·최영희·이종걸·정범구·임종석·이승철·임인배·김용균·전용원·현승일·김광원·안상수·안경률·도종이·김홍신·박명환·신영국·김기배·허태열·백승홍·정장선·송영길·김성호·함승희·송석찬·이인제·김운용·김덕규·곽치영·박인상·장영달·정철기·김태홍·서상섭·조재환·배기운·신계륜·김옥두·전용학·강운태·이훈평·원유철·이재정·박상희·윤경식·김성조·이주영·심규철·신현대·맹형규·이인기·이규택·이재오·강창성·박종용·윤여준·박세환·박승국·박시균·김찬우·박혁규·안영근·이창복·이우재·김근태·임채정·박상규·정세균·이근진·심재권·이상수·박양수·정문화·김원길·강신성일 의원 발의) 34
8.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35
9.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정부 제출) 35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36
11.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조웅규·장영달·박세환·천용택·이용삼·최명현·강창성·이연숙·김기춘·김덕룡·강창희·서청원·장태완·배기선·김덕규·신기남·현승일·김덕배·이경재·민봉기·윤경식·고홍길·심규철·임인배·유한열·박원홍·서정화·박명환·김운용·박승국·이인기·정대철·홍준표·박주천·이인제·김기배 의원 발의) 37
12.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강창희 의원 외 52인 발의) 37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8
14.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8
15.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8
1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40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40
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김용학·이낙연·김옥두·정철기·유재규·김경재·강운태·김정천·김홍일·송석찬·천용택·김태홍·전갑길·정우택·이주영·이정일·이훈평·이원성·김상현·신경식·이원창·배기운·이성현·박주선 의원 발의) 40
1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박병윤 의원 대표발의)(박병윤·한화갑·홍재형·허운나·정대철·추미애·정장선·김덕규·김만제·박세환·윤경식·이원형·박주천·김정숙·정재문·이원창·김경재·이낙연·정세균·장영달·김성호·고진부·김태홍·배기운·김원웅·신현태·박관용·유홍수·서정화·서청원·조웅규·정인봉·송석찬·정동채·박용호·천정배·정철기·송영길·심규철·권오을·정병국·안영근·김용학·박명환·정창화·도종이·최용규·김방림·설훈·정동영·김충조·이훈평·윤철상·이인제·김광원·김태호·임진출·신영균·

박시균 · 이상득 · 김용갑 · 권기술 · 전갑길 · 강운태 · 이정일 · 김경천 · 김옥두 · 송훈석 · 이창
 북 · 최영희 · 박희태 · 정문화 · 이병석 · 민봉기 · 박상규 · 이승철 · 원희룡 · 이상배 · 임종석 · 김
 희선 · 김윤식 · 남궁석 · 설송웅 · 김화중 · 이상수 · 안동선 · 이상희 · 허태열 · 박원홍 · 박종희 ·
 조성준 · 김명섭 · 배기선 · 박종우 · 신기남 · 강현욱 · 유재건 · 김영배 · 원철희 · 함석재 · 조희
 욱 · 송광호 · 오장섭 · 강숙자 · 문희상 ·곽치영 · 이재정 · 박광태 · 이호웅 · 원유철 · 전용학 · 조
 배숙 · 장성원 · 김효석 · 조한천 · 김성순 · 김기재 · 정균환 · 김운용 · 박상희 · 김영진 · 김원기 ·
 김홍일 · 이미경 · 이강래 · 김태식 · 김근태 · 박양수 · 이재선 · 최돈웅 · 최명현 · 장재식 · 함승
 희 · 강성구 · 장정언 · 조정무 · 박병석 · 임채정 · 강신성일 의원 발의) 40

2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40

21.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2

22.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 · 권영세 · 김영춘 ·
 김진재 · 김형오 · 박근혜 · 박상희 · 박진 · 박헌기 · 오영식 · 이종걸 의원 발의) 43

23.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3

2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44

25.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12인 발의) 45

2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임채정 · 강
 봉균 · 강운태 · 김명섭 · 김성순 · 김성호 · 김운용 · 김희선 · 박상희 · 박주선 · 송영길 · 오영
 식 · 유시민 · 유재건 · 이종걸 · 이창북 · 이호웅 · 이훈평 · 장재식 · 정대철 · 천정배 · 허운나 ·
 홍재형 의원 발의) 47

2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48

28.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택기 의원 대표발의)(김택기 · 이낙연 · 배기운 · 이근진 · 김태홍 ·
 안영근 · 정갑윤 · 심재권 · 장성원 · 최영희 · 정대철 · 권태망 · 박병윤 · 유재건 · 이윤성 · 조성
 준 · 박명환 · 박상규 의원 발의) 48

29.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8

5. 赦免法中改正法律案(홍사덕 의원 발의)(홍사덕 의원 외 146인 발의) 49

6.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9

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31. 일체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 · 강봉균 ·
 강숙자 · 강운태 · 강인섭 · 고진부 · 구종태 · 권기술 · 권영세 · 권오을 · 권태망 · 김광원 · 김경
 재 · 김경천 · 김근태 · 김기재 · 김덕규 · 김덕룡 · 김덕배 · 김락기 · 김명섭 · 김부겸 · 김상현 ·
 김성순 · 김성호 · 김영환 · 김영춘 · 김옥두 · 김운용 · 김윤식 · 김원기 · 김원웅 · 김정부 · 김찬
 우 · 김충조 · 김태홍 · 김택기 · 김학송 · 김홍신 · 김홍일 · 김효석 · 김황식 · 남경필 · 남궁석 ·
 도종이 · 문석호 · 박명환 · 박병석 · 박병윤 · 박상천 · 박상희 · 박승국 · 박양수 · 박인상 · 박종
 근 · 박종우 · 박종희 · 박주선 · 박주천 · 배기선 · 배기운 · 서상섭 · 설송웅 · 설훈 · 송광호 · 송
 석찬 · 송영길 · 송훈석 · 신계륜 · 신기남 · 심규철 · 심재권 · 안경률 · 안상수 · 안영근 · 오경
 훈 · 오세훈 · 오영식 · 오장섭 · 원유철 · 유시민 · 유용태 · 유재건 · 유재규 · 유한열 · 윤경식 ·
 윤여준 · 윤영탁 · 윤철상 · 윤한도 · 이강래 · 이근진 · 이낙연 · 이미경 · 이부영 · 이병석 · 이상
 수 · 이성현 · 이승철 · 이완구 · 이용삼 · 이우재 · 이원성 · 이원창 · 이윤수 · 이재정 · 이정일 ·
 이종걸 · 이창북 · 이해봉 · 이해찬 · 이협 · 이호웅 · 이훈평 · 이희규 · 임종석 · 임진출 · 임채
 정 · 장성원 · 장영달 · 장재식 · 장태완 · 전갑길 · 전용학 · 정갑윤 · 정균환 · 정대철 · 정동영 ·
 정동채 · 정범구 · 정병국 · 정세균 · 정의화 · 정장선 · 정철기 · 조배숙 · 조용규 · 조성준 · 조정
 무 · 조재환 · 조한천 · 천용택 · 천정배 · 최명현 · 최선영 · 최영희 · 최용규 · 최재승 · 추미애 ·
 한화갑 · 함승희 · 허운나 · 현경대 · 홍재형 · 안동선 의원 발의) 52

35.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54
3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5
33.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5
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5

(11시09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盧在錫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질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이 다 질문을 마치면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시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후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1시 반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 바쁜 회의 시간 두고 의원총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1시 반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제 회의체의 결정 이전에 독자적인 선관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오늘 아침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敬在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강화를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오늘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제 막을 내리는 이번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준 국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연말과 금년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고, 오늘 오후에 통과되는 개혁입법은 바로 재판짜기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새 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전유물처럼 외쳐 온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법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번 총선을 초법적인 혁명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盧武鉉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노골적인 열린우리당 지지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2월 24일 취임 1주년 회견 때에는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해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든지, “개헌저지선의 필요”, “임기도중의 하차” 등의 발언 역시 명백한 관련 개입이요, 대국민 협박인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전략적 군불때기의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우당의 사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민참여 0415의 정치활동을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4·15 총선은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날”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지

위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의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 그동안에 선관위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 임좌순 총장은 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선수들이 심판을 불러 유리하게 봐 달라고 따지겠다는 것 아니냐,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제대로 본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독립성·자율성을 말한다면 대통령에게도 당당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하여 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입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으니 안 온다 했고, 오늘은 내일 전체회의가 있으니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심판이 심판 볼 사람 앞에만 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선관위의 막중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총선 이후 퇴임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접하기 때문에 퇴임을 각오하고 아마도 총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공직자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공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가공무원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앞서서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敬在 議員 총리께서 대통령도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은근히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전국 광역시·도단체장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민주당의 단체장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저는 자치단체장은 광역이거나 기초이거나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86조에 의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는 특정 정당의 정책정당을 홍보하거나 또는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李敬在 議員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무제한 법을 짓밟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야당들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패널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발언 내용의 위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탄핵의 일반론적인 사항으로 총리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敬在 議員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발언 이것은 바로 사전 선거요, 관련 개입이요,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통령께서는 국가공무원 법상으로는 정치 활동이 보장돼 있고요, 선거법 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전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는데, 몇 차례 발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관권선거라는 표현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권선거는 집권 여당이 국정원 검찰 경찰 선관위 같은 권력기관과 선거 관련 기관을 활용해서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을 관권선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부로서는 관권선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李敬在 議員** 모든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 따르게 되고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직업공무원들이 굳이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을 따라갈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李敬在 議員**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무직이라면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또 경기도 지사나 정무직들이 똑같은 발언을 해도 용인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러니까 정치 활동의 범위로 볼 것이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李敬在 議員**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이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의 여지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李敬在 議員** 盧 대통령께서 국민참여 0415의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이 조직에서 발표한 1차 지지후보자 292명 중 열린우리당 후보가 239명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0명 3.4%, 민주당 17명, 민노당 9명, 또 한나라당 10명도 3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은 못 해 봤고요, 저희 법무부 쪽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의견표시 정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李敬在 議員**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역시 국참 0415는 건전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자기 편 들어 주는 데 칭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열린우리당에 내부적으로 또 국민참여본부, 또 그 산하의 개나리봉사단, 우리문화기획단, 이렇게 명백히 시민단체 이름을, 사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조직은 바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참여 0415뿐만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낙선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인 단체들도 구성되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敬在 議員**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금년 중 불법선거운동 1위는 열우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우당 311건, 한나라 270건, 민주당 136건입니다.

검찰의 고발 건수도 열우당 21건, 한나라당 14건, 민주당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저께 매수 혐의로 구속된 1호는 저희 서구 강화를 지역에서 뛰던 열린우리당 측이고, 또 어제 경기 모 지역에서 돈봉투를 주다 걸린 사람이 바로 열린우리당 후보의 부인입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 것처럼 정치개혁을 외쳐 왔는데 바로 돈 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실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요즈음 방송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시다마는, 작은 것들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묘하게 한나라당, 민주당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적의원들을 표기할 때 금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표기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 민주당’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열린우리당은 하나도 안 걸린 것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朴權惠 의원의 경우 검찰에서 ‘이적료’라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오보라고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적료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방송 편성이나 편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시다마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의 잣대로 신문을 판단한다면 그 역시 매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사나 신문사의 자율적 판단, 공공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敬在 議員 지난 대선 때 김대업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치명상을 주듯이 검찰과 일부 언론의 치고 빠지기 식 보도로 야당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편파방송에는 국민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정 방송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회의 결산에서 본 의원이 “공영방송인 KBS 시사프로그램에 노사모를 조직해서 직접 盧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면 편파방송이 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념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문성근 씨는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인물현대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 문성근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전에 열우당에 입당해서 선거대책위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을 맡았습니다. KBS는 지난 9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겠다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직무를 마친 뒤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윤리강령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일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우당을 지지하는 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를 명들게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문성근 씨는 4·15 총선을 4·19혁명과 6월 항쟁에 이은 세 번째 시민혁명이라고 했는데 법과 질서에 의해서 치러져야 할 총선을 초법적 혁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있는 가운데 선거를 치른다면 열린우리당이 제1당 또는 과반수 정당이 되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19 같은 진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해 둡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相熙 議員 민주당 계양지구당 위원장 朴相熙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바깥의 국민들을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전부 다 차떼기만 하는 줄 알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돈 받고 노상 주차장에서 돈 받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제 애들도 기본이 ‘억’이에요. 옛날의 만원이 아니고 기본이 억이에요.

이런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차떼기로 받은 한나라당과, 그다음은 또 얼마인지 금액이 밝혀지지 않아요. 검찰 수사가 국민한테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수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돈을 준 재벌하고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재벌정책을 자꾸 내놓아요. 과거 몇십 년 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재벌도 재벌대로 업종 전문화된 세계화된 다국적기업으로 이 나라 대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받아 이것에 대해서 은근히 물려서고 있어요.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또 검찰 수사에서는 돈을 별로 안 받았다는 열린 당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동안 저는 경제단체장으로서 총리님과 여러 가지 회의도 했는데 과거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계속 유지만이 이 나라 재벌 개혁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두 당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큰 결탁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규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대기업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우리가 IMF 기간 동안 대량 실업 발생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내부의 수출 관련 예외규정은 많이 풀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느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벌들이 IMF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계열기업 숫자도 늘어나고 오히려 분식회계도 더 늘어나고,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지금 돈을 몇백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 가지고 재벌정책을 강하게 몰고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또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한국이 기업규제가 심하다 했을 때 한국에서의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하기보다는 좌우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총리님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든 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 중소기업 모임에서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 제도의 계속 유지가 필요한데 재벌과 정치권의 로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죽겠다고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전 선거운동의 실패와 관권 선거운동의 실패에 대해 고발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에만 전념할 것이며 초당적 입장에서 각 정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盧武鉉 대통령의 이 말씀을 듣고 과거 대통령들이 선거에 직면하면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공정선거관리체제를 최우선시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총리도 기억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朴相熙 議員** 盧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시간 동안 네 개의 공중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총선 막바지에 슬며시 입당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중앙선거관위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相熙 議員**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위는 盧 대통령에게 양강구도 발언과 리멤버1219 행사장에서 시민혁명 발언 등 김두관 전 장관의 업적 칭

찬 발언에 대해 관련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켜 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이 불안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경고서한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우이독경인데?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총선을 관리할 행정수반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이를 방지할 경우 17대 총선의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동의하지 않습니다.

○朴相熙 議員 총리는 인격적으로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한테 불법 선거에 개입하라는 것입니까? 두려하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15대, 16대 총선 때에는 총리실이 선거에 관한 중립 지시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로서 각 행정조직을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라고 하는 특별지시를, 3원칙을 구체화해서 시달한 바 있고, 이와 같이 내각 산하의 모든 행정조직은 엄정중립의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2월 27일자 중앙일보를 보셨겠지요? 1면 톱에 경천동지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결판나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치의 결정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정·청 합동지휘부를 구성해 영입 대상자를 협박하여 선거에 투입하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를 유인하는 한편, 국정은 총선 시까지 미뤄 놓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전략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공작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출처 모를 괴문서 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대외비 총선전략 문건까지 확인된 마당에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

니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합동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마저 총선에 올인한다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래도 계속 대통령을 두둔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적하신 문건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휘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아야 할 텐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는 특정 당과 선거전략에 관해서 단 한 차례도 상의해 보거나 얘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는 사실상 뒷걸음질을 치고 민생과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400만 신용불량자에 잠재 신용불량자가 350만이라요. 근 800만 신용불량자를 안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취직을 못 해요. 대학 졸업자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리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전쟁, 세계 경제 침체, 북핵 위기 또 사스 발생 등 대내외적인 아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시장의 위기를 안정시켰고, 또 부동산시장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수출은 호조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에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총리!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신용불량자라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안 돼요.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면접을 하면 정식 직원보다는 일용

직이나 임시직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식 직원이 되면 월급이 압류가 돼요. 이 부분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그래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이 빨리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자리 19만 개를 창출한 데 비해 盧武鉉 정권은 4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실업대책이라고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모두가 백화점식 나열로 일관하면서 마치 새롭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과거에 해 온 정책들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고 우리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어 가지고 수도권에 공장이 벌써 사오십% 비어 있어요. 이런 제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예,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14만 개 내지 17만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인력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약 5만 개였습니다. 이 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자금, 금융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朴相熙 議員** 지금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위한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금년도 국정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 엄정중립의 입장을 확실히 지켜 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국중립 내각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朴相熙 議員**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식언하고 空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에 각료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임기 5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21개 부처 장관급 중 1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으며, 이들 중 6명을 총선 올인 차원에서 차출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1년에 몇 명의 장관이 임명되었습니까? 3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대체가 우선인지 총선 전략이 최우선인지 헷갈리는 실정입니다.

각 부를 통할할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무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임기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짧아졌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朴相熙 議員**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당파·종교·지역 등 부분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아니 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총선 올인 공작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3·15 부정선거를 4·15에 다시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3·15와 같은 부정선거, 관권선거는 현시점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선 행정조직이 직접 선거에 관여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은 일선 행정조직이 모두 다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아니면 민주당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관권선거는 도대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相熙 議員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의원 오늘이 사실상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16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16대 국회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16대 국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16대 국회는 참담하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또 17대 국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으로 참혹한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아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수백 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정쟁에 가까운 토론을 주고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16대 국회가 지금 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가고 있는 디지털 정치 시대로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뜻 단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정치 시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폐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盧武鉉 대통령께서 16대 국회가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의 목소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더 떳떳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이 정말로 깨끗해져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라는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이 순간 그 깨끗한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서 이제 멋진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워 나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7대 국회를 만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불법성 여부에 관해서 논란을 벌이는 일이 자칫 또 다른 정쟁과 대통령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창당 이념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 처벌해서 열린우리당의 창당 목적에,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또한 선거 준비 과정에서 문건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저희 당에서 만든 문건 중 저희 당의 정식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 꽤 높은 수준의 정치 기획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문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문건은 공식문건이 아니고 또 저희 당에서 그 사람은 해촉시켰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선거관리 준비에 관해서 따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탄핵 운운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선관위는 이 순간 깨끗한 정치를 탄생시키는 참으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17대 국회가 참으로 생산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엄정한 선관위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주심을 맡고 있는 선관위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혹시라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심판

을 길들이기 한다든지 심판을 주눅 들게 한다든지 또는 심판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맞는 심판을 원하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 심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심판의 권위를 존중하고 심판의 엄정한 노력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국민도 그러한 선수의 자세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 전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국민에게 호된 비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가 국민에게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정 정당, 특히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 내야 됩니다. 또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안정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정 기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을 해 먹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목표 달성해 내기 위해서 안정세력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호소도 불법이라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엇그저께 TV토론에서 존경하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께서 “대통령이 안정의식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말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바로 정치의 안정은, 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오순도순 함

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이런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 또는 특정 정당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국회가 정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당을 초월해서 우리 국민에게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정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단체 내지는 여러 시민운동가들이 새로운 정치혁명을 부르짖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정치 시대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스며들고 정치를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만이 우리 정치가 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자기 이익과 관계 없이, 또는 본인들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우리 정치를 보다 더 깨끗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아량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법적으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재철 의원 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고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정치활동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정당 지지가 가능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심재철 의원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 지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심재철 의원 정당 지지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선거운동이나 아니냐……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최근의 발언은 적절하셨다고 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최근의 발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의원 열린우리당 지지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발언……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 당적 있으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현재로서는 없지 않으신가 합니다.

○심재철 의원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요?

○심재철 의원 아니, 대통령이.

○法務部長官 康錦實 당원이라는 것은 입당 절차가 있어야 당원이 된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당원이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현재로서는 법적인 당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네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심정적인 당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입당하시겠다고, 시기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심재철 의원 대통령은 그러면 정신적 당원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신적 당원이든 법적 당원이든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선거법을 따질 때 정신적 행위를 따집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행위를 따집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이 당원 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선거법과 관련이 없더라도.

○法務部長官 康錦實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의원 당원이 아닌데도 본인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 ‘국민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작년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의 실업률도 제작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제작년보다 1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IMF 때보다도 더 고달픕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망쳐 놓고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근 최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전 선거운동입니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선거법 제한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2억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모르시고 저한테 여쭙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재철 의원 어떻게 되냐고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 단순한 수치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좀 난감합니다.

○심재철 의원 법정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2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이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대답할 만한 질문인지 좀 의아합니다.

1억 2000만 원 넘으면 위반 아닙니까? 만일 법 기준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 초과하면 법 위반인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심재철 의원 자, 지금 개인 돈을 쓰든지 아니면 후원회로 모금된 돈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지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구체적인 답변은 법조문을 한번 더 검토하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참모들 도와주세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철 의원 이것은 상식인데요, 개인 돈이든지 아니면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든지 그것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보십시오.

○法務部長官 康錦實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심재철 의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선관위에 7억 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을 썼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盧武鉉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경선비용이 십수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가 7억 원 정도입니다. 위반일 수 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발언 말씀이 진실이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점검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직접 할 부분은 아니고 검찰에서 경선자금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단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필요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께서 분명히 한도를 넘었으면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용인 여부가 아니고 경선 자금은 고발된 부분도 있고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별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심재철 의원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조사 대상이고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리무진 도둑은 도둑이고 티코 도둑은 도둑이 아닙니까? 리무진을 훔치면 도둑이고 티코를 훔치면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훔쳤을 때 절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일이고 법무부장관의 별도 답변이 필요한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심재철 의원 둘 다 절도는 절도네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훔치면 절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심재철 의원 답서리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

독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절도의 개념도 있고 또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처벌 가능성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절도냐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선자금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티코와 리무진으로 비유하셨는데 티코와 리무진도둑 이야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수액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죄질의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죄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사법 처리하고 있지만 죄질여부나 금액에 따라서 신병 처리를 한다거나 사법처리의 다양성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금의 수수 경위나 적극적인 수수 여부, 요구 여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은 위법이네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민주산악회는 사조직이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金泳三 대통령 때 산악회가 아닌가 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민주산악회와 개나리봉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개나리봉사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장관이 차관이나 국장에게 “당신 출마해라” 이렇게 종용할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강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권유할 수는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이 장관에게 권유를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에 대해서는 15대 총선 때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입당을 권유하거나 출마를 권유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인 해석을 요청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제로 강권하지 않는 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강권한 일은, 또 출마를 강하게 권유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尹德弘 전 부총리께서 盧 대통령이 대구 지역의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씀하셨고, 柳寅泰 전 정무수석께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지만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尹德弘 전 장관의 사임 배경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얘기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면 그 언론이 잘못된 보도이겠네요?

○**國務總理 高建**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확인한 뒤에 오보인지의 여부를 저에게 회신해 주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경기도 분도를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분도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경기도 분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한수 이북의 경기도 분도론은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오면 정부가 검토할 것이지만, 그러나 현시점까지는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열린우리당의 문건에 따르면 국정 우선순위가 당, 청, 정 이렇게 해서 정이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가 맞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 문건 자체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순위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컨트롤 타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재철 의원** 굳이 매기자면 ‘정’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어디가 앞에 가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 앞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어디가 앞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이 문건의 작성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문건에 대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조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단 열린우리당에서도 해명을 했고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글썄, 정치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시점에서 전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심재철 의원**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표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닐까요?

○**國務總理 高建** 전후 맥락을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것 역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온 표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총리로서?

○**國務總理 高建** 글썄, 제가 여기서 전망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은 정치인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2월 9일자 조사를 보면 국민의 63%가 대통령의 지나

친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총리께서는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國務總理 高建** 63% 이면에는 37%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의원**盧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된다,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이 불법 자금 받은 것은 서리고, 타 당의 후보가 저지른 것은 소도둑인 추악한 범죄가 되고,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은 개혁의 선구자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뽑아 버려야 할 잡초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장관들도 1년도 안 돼서 총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중립내각을 외쳤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기자더니 천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통일수도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반칙과 특권을 제멋대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개혁 구호가 아니고 국민은 민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말고 민생에 몰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훈고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잘못된 원칙을 시정해 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총리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안양 충훈고가 정상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배정했고, 그래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강

력한 항의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법원에서 재배정중지가처분 판결 사실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얼핏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학교가 완공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학교 측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그 피해를 학부모들에게 지라는 것은 타당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학교시설 공사와 학생들의 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철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당면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교육부로 하여금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寬用 의장, 趙富英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재철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심재철 의원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학생들은 법률적으로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은 무적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을 재배정하거나 등록 후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학생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배정 상태, 무적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곧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공사 완공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립학교는 개교 6개월 전에 학

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하면 입학배정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國務總理 高建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심재철 의원 교육부의 이런 근거 없는 원칙 때문에 학생들이 인생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배정해 주면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배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면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유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학생 책임입니까, 교육청 책임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교육행정 쪽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관료, 교육부, 교육청의 문제이지 그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야 될 교육부가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을 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로 하여금 당면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발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이 편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景梓 議員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 유례없는 국정의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盧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련의 정책행위가 그 도를 많이 지나치고 특히

관련 개입에 관한 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노골적이고 심지어 야비할 정도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를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반드시 득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金景梓 議員 국무총리께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문서로써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할 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국법상의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국법상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임기 후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징발된 장차관들은 모두 사표를 내는 절차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해임절차를 밟은 것인지를 묻고 싶고, 국무총리는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총선에 출마하기로 정치적 선택을 한 국무위원들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왔고 또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새로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문서로써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적어도 형식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國務總理 高建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했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렇습니까?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은 KBS 특별프로에 출연하여 김용옥 씨와의 대담에서 2003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104개의 법률안 중에서 102개를 통과시켰다고 본인의 입으로 밝힌 바 있는데 국

무총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4당 정책협의회를 열 번 가동을 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주요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만일 알고 계신다면 역대 정권 중에 한 해에 제출된 법안이 이 정도의 높은 통과율을 보인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盧武鉉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 불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국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 수행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느끼신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나 104개의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102개를 통과시켰는데 그런 의식을 대통령이 느끼고 계신다면 대통령이 느끼는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도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의 임시회기를 포함해서 주요 민생경제 법률안의 처리, 그리고 이라크추가과병동의안이라든지 한·칠레FTA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각 당의 협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마땅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쓴 돈은 십수억 정도로 애매하게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자랑하듯이 104개의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2개 빼놓고 다 통과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잘 설득했다는 얘기도 되고, 국회가 정부에 협조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과장벽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그간의 행정적·정치적 경력과 연륜이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개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적합하지 않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일일신하는 자세로, 또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항상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지금 총선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정도까지 국정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보좌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탄핵이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최근의 여론조사에는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 정확하게 50%가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무총리는 백년하청으로 편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 직을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무분별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충정 어린 고언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도 17대 총선만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야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또 총리가 이끄는 내각도 15대·16대 총선과는 달리 총리 이하 총리실 그리고 내각에 속하는 각 관계 부처의 행정조직이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면 총리께서는 제가 방금 인용했던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무슨 말씀이십니까?

○**金景梓 議員** 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록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저는 소위 돈 안 쓰는 선거, 선거개혁, 깨끗한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건 좋습니다. 그건 믿는다 치고, 대통령이 벌이는 일련의 관련 개입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國務總理 高建** 관련 개입 선거라고 하는 것은 3·15 때 보았듯이 전 행정조직이, 특히 도·시·군·구·읍·면·동의 일선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 투표 과정에 관여해서 여당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관련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장,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전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입니다. 어떻게 일선 조직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또 모든 행정조직은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것을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내려놓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국무총리께서는 특별지시를 내리건 어찌건 간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께서 열린 무슨 당의 선거기획단장처럼 매일 선거 개입 발언을 쏟아 내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명선거 타령만 불러 가지고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설사 돈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국정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태평성대처럼 하고 있으면서 양심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國務總理 高建** 내각의 중립성 유지에 대해서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金景梓 議員** 내각의 중립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있고 정치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는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적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겁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 이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하고 진언드릴 대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장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팀이 720 대 0으로 이 수사를 종결할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언제 그것을 발표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아마 다다음 주 초쯤 중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하나 제공하면 그 문제에 관련된 적절한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뭐든지 단서가 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2002년 12월 초에 후보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저도 각 기업으로부터 모금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현대와 삼성과 그 외 어떤 기업 3개를 맡은 적이 있는데, 현대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현대 정몽구 회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이상수 본부장이 전화 연락이 와서, “현대에 연락했느냐?” 그래서 “연락을 아직 못 했다,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쯤 이상수 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현대가 돈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전화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것은, 제가 삼성의 모 임원에게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답변이 “대통령후보에게 가서 사람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치자금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명륜동에 있는 盧武鉉 후보 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도 나중에 이상수 본부장에게 제가 방문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 기사가 지금도 제 운전 기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후보께서 “그러면 그것을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서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거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말겠습니다.” 해

서 그 명단을 盧武鉉 후보의 부산상고 1년 선배 되는 이학수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도 삼성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기 김해 진영의 그 가난한 봉화 마을에 하도 배가 고파서 까마귀도 울고 간다는데, 울고 가는 까마귀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말씀하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취지이신지……

○**金景梓 議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盧武鉉 캠프에 대해서 자금을 전달할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양했어요. 누구인가가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확실치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발언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제가 이 내용은 밖에 나가서도 인터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학수 본부장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20 대 0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전혀 불가능한 이런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盧武鉉 캠프 경선자금에 대해서 차단막을 치려는 어리석은 기도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盧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는 대단히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선택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기도를 가지고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약속하시지요? 방금 제시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것입니다.

○**金景梓 議員**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검토 여부가 남는다고 봅니다.

○**金景梓 議員** 검토 여부라는 그렇게 애매한 말을 쓰지 말고 정확한 우리말을 쓰세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수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어떻게 검토할 예정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金景梓 議員**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국민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증인을 설용의가 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말씀하신 발언의 진위 여부는 검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발언도 많았기 때문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金景梓 議員** 약속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사를 해 보고 안 되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金景梓 議員**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아닌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질을 주세요. 저는 삼성비자금의 저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지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게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부터 탄핵을 시작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의원** 한나라당 영등포을 출신 권영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법에 명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질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법 내용도 모르고 국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이 조항이 위헌심판청구가 된 사실은 없다고 기억하는데 이 조항이 위헌심판청구가 됐는지 여부 혹시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왜 불출석한다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오늘 회의 시작 초에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것이 뭐였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권 의원께서 들으신 내용과 똑 같습니다.

○**권영세 의원** 대답을 해 보세요.

○**國務總理 高建** 제가 그대로 기억은 못 합니다.

○**권영세 의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첫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내일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가 결정되기 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더 중요한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독립성·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출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문의 법 조항인데 이렇게 위배하고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선관위 전체회의를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지금 국회에서 요청한 날 다음에 합니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두 가지 질문 모두 총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총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총리께서 일하시는 데에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국무총리는……

○**권영세 의원**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행한 명백한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명선거를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채 지금 계속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분은 말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저는 17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영세 의원**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타락선거라는 측면에서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권영세 의원** 뭘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불법 선거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3원칙을 정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불문하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적발해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영세 의원** 역대 선거에서 그런 식의 방침을 정하고 그런 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말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15대 총선 때도 국무총리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16대 총선 때도 국무총리가 그런 중립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권영세 의원** 누가 됐건 중립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치러 내겠다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전혀 안 한 선거가 있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무총리가 전 산하조직에 엄정중립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만약에 우리 영등포을 지역의 구청장이 지역 케이블TV에 나와서 “권영세 후보를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권영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안 되면 정말 구청장해 먹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다닌다면 저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유리, 불리는 제가 판단이 안 갑니다.

○**권영세 의원**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불리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왜 불리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듣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는 듣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별로 인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그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듣기에 따라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운동 하면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은 선거운동입니다.

○**권영세 의원** 지지해 달라고 돌아다니면 선거운동이 맞기는 맞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권영세 의원**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다고 지금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4일 전국에 방영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열린우리당 후보나 그 당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리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처한 정치적 입장,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희망까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의원** 그 정치적인 희망을 얘기하신 것이 열린우리당이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권영세 의원** 지금 위법성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國務總理 高建** 내일 선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권영세 의원** 선관위의 판단과 별도로 지금 총리께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제로서 물어보는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전 선거운동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다 선거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위법성에 대해서는 내일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가 사전에 알가알 부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선거법에 관한 해설책에서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한 내용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라면 그게 실제 유리하게 작용했든 불리하게 작용했든 선거운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동감합니다.

○**권영세 의원** 한 가지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관권선거의 개념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관권선거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3·15 때와 같은 관권선거, 부

정선거의 예를 드시면서 관권선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관권선거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구·읍·면의 전 직원들이 여당을 위해서 선거와 투표에 직접 관여한 관권선거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중립을 견지하고 있고 전혀 그러한 관권선거를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전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대통령이나 일정 행정단위의 장이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면 실제로 부정선거를, 매표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통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이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관권선거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관권 개입 선거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관권선거라는 것은 최소한 관의 조직과 관의 권력이 선거 투표의 과정에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권선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지를 호소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고,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해서 특별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반장이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 등도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관권선거 때에 그러한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수시로 탄핵을 발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헌정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에게 일정한 수준의 의석 수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 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표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3분의 1선에 미달하게 된다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우려의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총리께서 지난 2월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하면서 선거법 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며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권영세 의원**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명선거 3원칙을 발표하신 바가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권영세 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중앙선관위에서만 판단한다면 총리실에서는 왜 끼었습니까, 공명선거 3원칙에 대해서?

경찰, 검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법무부장관하고 행정부장관을 통해서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왜 선관위에서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공식선거법, 선거 관계 법의 권위적인 해석 판단은 중앙선관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해석 판단은 우선 일차적으로 중앙선관위원회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 일차적입니까? 최종적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최종적인 것은 역시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법원 단계가 아니고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과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암만 고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더 권위 있는 결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을 간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미루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리이러한 행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과 기준과 판례 비슷한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경찰에도 지시했고, 검찰에도 지시를 했고, 이에 의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선거법상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세 의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尹德弘 교육부총리나 金振杓 경제부총리, 權奇洪 노동부장관, 韓明淑 환경부장관, 기타 여러 부처의 차관들과 같은 행정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청와대나 당의 권유로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권영세 의원** 또 보도에 따르면 文在寅 수석은 출마 권유를 피하기 위해서 네팔까지 피신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마에 나선 장차관들의 경우에 총리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보셨을 때 업무 능력 면에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권유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

나……

○**권영세 의원** 정치권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당들을 포함합니다.

○**권영세 의원** 이러한 분들이 다 열린우리당으로 갔으니깐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권유를 받은 것이네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적 선택과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리로서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총선에 출마를 할지라도 사임하는 그날까지는 자기가 맡은 국정에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내각을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통할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金振杓 부총리가 사임하는 그날까지 국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하고 모든 토론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현실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경제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振杓 부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후임을 인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金振杓 경제부총리 같은 분이 잘하고 계셨다면, 지금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분들을 갑자기 빼는 것이 과연 잘한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하고, 또 후임을 인선함으로써 해서 경제정책 수행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의원** 총리께서 청와대나 당 쪽, 구체적으로는 鄭東泳 당의장 같은 분들의 권유로 해서 장차관들이 사직하고 출마에 나서기로 했을 때 말린 적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말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대 총선 때에 국무위원 일곱 분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16대 때 다섯 분이 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섯 분의 국무위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일은 관례적으로 있어 왔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세 의원** 총리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국정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장차관들이 당이나 청와대의 권유로 출마를 할 때 총리께서 말리시지 않고, 또 당이나 청와대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 총리께서 책임총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책임총리제라든지, 프랑스식 정치체제하에서의 책임총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출마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마는,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전제하는 한 우리나라의 헌정 시스템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정 시스템하에서 국무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고 자기 행정경험을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살리겠다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권영세 의원**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공무원이 들을 리 없으니깐 관권 개입 선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권영세 의원** 그런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지요? 제가 아까 분명히 봤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취지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도 유권자가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니까 선거운동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의원님께서 출마하시고 저를 호소한다는 취지라면 선거운동……

○권영세 의원 그것이 뭐가 다른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권영세 의원 그러면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식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경우는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경우라도 유권자들이 구속되지는 않으니까 선거운동이 아니겠네요,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法務部長官 康錦實 선거법 위반은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세 의원 관권선거는 어떻습니까? 관권 개입 선거는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선거운동 여부는 구속 여부를……

○法務部長官 康錦實 현재 우리나라에 관권선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지구당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하겠다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발언을 알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신문에 난 것은 있지만 반드시 수사를 진행하겠다, 조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추후 검찰이 검토해서 할 것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권영세 의원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法務部長官 康錦實 수사에 관해서 보고는 받지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권영세 의원 장관께서는 검찰을 지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지휘는 전혀 안 하시고 보고만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특별히 지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휘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사는 가능한 한 검찰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이나, 뭐라 그럴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미처 생각할 수가 없는 측면들,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副議長 趙富英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권영세 의원 장관께서 국회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선관위 사무처장 말대로 법무검찰행정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선관위하고 법무부 검찰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법무행정에 대해서……

○法務部長官 康錦實 훼손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지구당 출구조사하고 관련하여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장관께서는 관여한 바도 없는 것 같고 보고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관에 대한 질문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法務部長官 康錦實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세 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장관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총장이 나오는 것은 법적

으로도 지휘감독권자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적절치가 않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서 총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어제 盧武鉉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사 말씀 중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언급 사실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적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盧 대통령의 일본 총리에 대한 공격이 최근의 반일감정에 편승, 총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종이 울리면 침을 분비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두 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하면 총선에 올인한다느니 관련선거를 한다느니 하면서 심지어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역사적 무게만으로도 엄숙하기 그지없는 3·1절 기념식사에까지 총선용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브레인 서바이버’를 연상시키는 트집 정치, 네거티브 정치를 계속한다면 안 그래도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라는 자괴감부터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리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관련선거를 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참여정부의 내각이 총선에 올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金泳三 대통령 정부 때 15대 때는 13명의 내각이 총선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님의 16대 총선 때는 열일곱 분의

내각이 총선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번 17대 참여정부의 내각에 있던 분이 총선에 참여하는 분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번 17대 총선에 국무위원 출신으로서 입후보하신 분은 다섯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걸 의원** 오히려 전 정부에 비해서 수적으로 보아도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관련선거라고 하는 이유를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좌우간 저로서는 15대 때도 그랬고 16대도 그랬고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그러한 국무위원들은 늘 있어 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 총리께서는 과거에 내무부장관도 하였고 총리도 하였고 여러 가지 선거 주무부서의 수장 역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나 이런 점에 관한 경험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물론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총재를 역임하고 계신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작고 큰 선거법 위반 논란 시비는 있었습니다.

경우를 보면 金泳三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재를 영입하는 직접적인 영입작업을 대통령이 하신 점이라든지 또 박찬중 전 의원을 신한국당에 영입시킨 것이라든지 그리고 매주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초치해서 총선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것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이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선법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에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도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내각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 때는 정부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선거전략회의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걸 의원** 그 당시에 ‘영입이라든지 선거에

의 간접적인 참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도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國務總理 高建** 그건 저도 보았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체적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간접적인 관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목인이 되거나 용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국무위원에 대한 출마 권유 그리고 전직 총리에 대한 영입 발표 등등에 대해서 당시 상대당의, 다른 정당의 사무총장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거위원회의 답변은 “강제 입당이 아닌 한, 공개 모집이 아닌 한 그것은 일반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입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입당 인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선거대책을 협의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선거 개입 여부 논란이 있을 행위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라든지 관훈토론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선거 개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개인적인 사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물론 선거와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걸 의원** 아무튼 총리께서는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어떤 여부에 관련된 지시를, 조금이라도 그런 의문이 있는 지시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

○**國務總理 高建**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실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좀 문졌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요, 사전선거운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심리적인, 정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공선법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리고 공선법에는 단순히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적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그것이 좀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일반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냐 아니냐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번에 대통령의 관훈토론회에서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이나 그다음에 또 퇴직하는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비공식적 자리에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말씀이나 이것들이 이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걸 의원** 그리고 또 공선법에는 단순한 지지 의사 표명 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아예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발언 또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순한 의견 개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기자회견에서의 말씀은 기자회견이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었고, 전체적인 그 말씀의 요지를 보면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걸 의원** 판례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변호를 잘 체크는 못 했습니다마는, 91년 판례에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은 인터뷰에 응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라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취지로 대통령님 말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이 판례 취지에 이번 대통령의 말씀이나 발언은 거의 부합하는 것이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비슷한 기준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저의 아직까지 의견입니다.

○**이종걸 의원**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관들의 자리, 오찬에서 그야말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행한 말씀, 이게 누구에 대한 선거운동인지 어떤 목적의 선거운동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때 얘기한 어떤 정치적 전망 이런 판단 같은 것이 그야말로 공선법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지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걸 의원** 공선법 제86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것은 대통령도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명시적인 규제가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조사를 발표하는 행위…… 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전혀 포함되지 않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구체적인 적용 법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도 순전한 법률행위입니다. 이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에 또는 헌법에 위배한 때, 지금 이런 위법논란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헌법상 탄핵사유의 요건은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작년에 재신임 여부를 말씀하신 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쉽

사리 함부로 대통령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종걸 의원** 이상입니다.

법률안 700여 건을 포함해서 80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번 5월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을 하면서 정작 그런 비난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부디 16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늘 본회의에서 올라온 법안이나마 성심껏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입법 등 중요한 안건 처리가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4건입니다.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면 6시 전에 마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 제출)(계속)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

관한법률안(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구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3월 방탄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16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법안 심의와 통과에 협력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과거사특위 위원 여러분, 법사위원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제를 잘 심의하셔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7일 본회의 때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 도중에 퇴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어떤 해묵은 이념대결을 다시 재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취지를 잘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되기까지 6·25전쟁 전후에 걸친 수많은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 명예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을 해소시켜 주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1949년도에 좌익들을 회유·협력하기 위한 명분으로 약 30에서 40만에 걸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만들어서 쌀이나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익세력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6·25가 발발하자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학살 명령이 내려졌고, 전국에 걸쳐서 약 30만 명의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철삿줄에 묶여서 무참하게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0만 명에 걸친 수많은 민간인들이 좌우익 대립 과정 속에서 아무런 죄 없이 무고하게 학살되어 가고 이에 따른 보복살인이 연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한 양민학살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학살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유족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 보고 유골조차도 수습하지 못하고 5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3·4대 국회 때 수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그나마 4·3사건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상규명과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인 다른 수많은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약간의 의혹 사건만 있어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의 수많은 양민들의 이 억울한 죽음은 단순한 일반 국민에 대한 알권리뿐만 아니라 그 당해 가족들에게는 한 맺힌 원한을 풀어 줘야 될 신원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박종철 군의 고문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신원권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구의 존립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 가치입니다. 이것을 실현시켜 주어야 될 우리 국회가 당연히 이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인천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만, 광상훈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5대 국회 제35차 본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억울한 형편을 당한 것은 우리 국회가 조사·시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4대 국회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창 등에 대한 지역의 진상조사를 하여 진상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수많은 유족들의 한 맺힌 목소리도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의 유족들의 정당한 활동조차도 탄압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金泳三 정권 때 거창양민학살사건이 해결되었고, 金大中 대통령 때 우리 秋美愛 의원이 노력해서 4·3사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16대 국회가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밥그릇 챙기는 것만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16대 국회 마지막에 이 친일문제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하의 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저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나, 법사위에서 심의할 때 그 친일한 부역자들이 흑시라도 억울하게—친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친일분자로 몰려서 당할지 모르는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나 명예 침해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36년 동안 민족을 배반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사형 처별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36년 동안 조국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해서 대동아공영권을 외치고 일제침략을 찬양하던 자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의 형사처별도 하지 못하고, 일명 반민특위가 활동해서 구속된 사람도 바로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에 협력한 자의 명예가 다칠까 무서워서 이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에관한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 좌우대립 속에서 일제에 협력한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친족·혈연 관계에 따라서 이테올로기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동생이 빨치산이다 보니까, 친척 중에 누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보도연맹에서 쌀을 준다고 그러니까 가입해서 억울하게 죽어 간 100만여 명의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본인들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동대지진 때 학살되었던 우리 조선인들, 남경대학살 때 죽었던 억울한 중국인들, 일제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합리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약 34명의 억울한 사람이 당시 경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기밀서류로 분류되었던 것 중에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서류들은 공개시켜야 되고, 미군 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6·25 전후 관련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을 시켜 주어야 될 의무가 저희 국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을 포용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신원시켜서 국민 대화합, 민족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날의 과오를 과감하게 인정합시다.

‘실미도’ 영화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속에서도 국가권력이 범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국가가 사죄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보수적인 사람들은 ‘실미도’ 영화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무엇인가 체제에 불안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젊은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을 했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6·25전쟁 휴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이 법률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거나 어떤 정통성의 시비에 걸리거나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이념 대결 속에 억울하게 죽었던 우리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신원해 줌으로써 진정한 민

축화합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세하게 이 법안을 살펴보고 흔쾌하게 동의해 주셔서 우리 16대 국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나마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명예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른 토론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25전쟁후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밖에 있는 의원들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밖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72인, 반대 96인, 기권 7인으로서 6·25전쟁후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 제출)

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 의원 발의)(조재환 의원 외 145인 발의)

(15시5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2건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咸承熙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동 의원이 소개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주로 윤락행위의 금지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안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광고 등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둘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의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증인 또는 피조사자가 청소년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매매를 한 자의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서 법원은 보호관찰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사회봉사·수감명령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불법 원인으로 인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하고, 그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도 무효로 하며,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착각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벌칙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촉발시키는 행위를 강요·알선·광고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성매매피해자의 형사처벌 제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趙在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수

단으로서의 전자어음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첫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중앙관리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자어음의 발행·배서·보증 등 어음행위는 그 법률안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배서·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넷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관리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률안을 수정하였는바,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이 법률안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며, 현행 어음교환소의 지정권자도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전자어음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셋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백지어음의 형태로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7조5항에서는 전자어음의 총 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원안 제8조에서는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있는바 분할배서는 어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조를 삭제해서 분할배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는 전자어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분할배서제도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섯째, 전자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어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관

리기관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의무 및 약관의 명시·통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전자어음 거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제3장으로 신설하였고,

여섯째 제21조 및 제22조로 구성된 제4장을 신설해서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감독 검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상정할 순서

입니다마는, 이들 법안에 대한 유인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연숙·이미경·김정숙·임진출·손희정·김방림·허운나·김화중·추미애·김경천·김희선·최영희·이종걸·정범구·임종석·이승철·임인배·김용균·전용원·현승일·김광원·안상수·안경률·도종이·김홍신·박명환·신영국·김기배·허태열·백승홍·정장선·송영길·김성호·함승희·송석찬·이인제·김운용·김덕규·곽치영·박인상·장영달·정철기·김태홍·서상섭·조재환·배기운·신계륜·김옥두·전용학·강운태·이훈평·원유철·이재정·박상희·윤경식·김성조·이주영·심규철·신현태·맹형규·이인기·이규택·이재오·강창성·박종웅·윤여준·박세환·박승국·박시균·김찬우·박혁규·안영근·이창복·이우재·김근태·임채정·박상규·정세균·이근진·심재권·이상수·박양수·정문화·김원길·강신성일 의원 발의)

(16시0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7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 임진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女性委員長 林鎮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위원장 林鎮出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2년 9월 11일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2003년 12월 29일 제244회 국회 제1차 여성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일시지원시설 중장기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을 두도록 하며,

둘째,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상담소는 현장방문 상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부장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수급권 및 이용권을 박탈·제한하는 경우,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때에 시설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폐쇄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재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함에 있어서 경찰의 동행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장이 질병치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법상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정 법률안인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생략한 바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 법률안과 관련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여성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여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정부 제출)
(16시1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항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2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政夫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입니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金文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부당퇴출은행의피해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이상득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강제부당퇴출은행의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대안은 1997년 11월 21일 IMF로부터의 긴급자금 요청 직후 1년간 긴급하게 금융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상당히 상실한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1997년 11월 21일 금융구조 조정으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긴급하게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인수 금융기관 등에 미고용된 자로 하였고,

둘째, 정부는 금융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한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설 및 운용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제명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으로 수정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임을 명확히 하고,

둘째, 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 등 특정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특구 지정 시 고려 사항에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삭제하는 대신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도시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광고물설치특례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은 규제완화 대상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를 특례인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등을 완화하는 특구계획 작성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 절차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2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당법,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최종정리를 하기 위해 정개특위 회의가 지금 열려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한 170여 분 됩니다. 한 20여 분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데 투표에 빠지지더라도 바로 회의를 열어서 나머지를 의결하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소집하시지요.

그러면 한 20분이 빠지면 회의정족수가 150여 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개특 위원들은 빨리 회의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6시1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0항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창복 통일외교통상위원 이창복 의원입니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에서 체약 당사국들에게 부과한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남극 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으며, 각종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남극환경보호감시원 임명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남극연구활동진흥교육의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寬用 의장, 金台植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남극활동 허가 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과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미성년자를 남극활동 허가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령으로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자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이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65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조웅규·장영달·박세환·천용택·이용삼·최명현·강창성·이연숙·김기춘·김덕룡·강창희·서청원·장태완·배기선·김덕규·신기남·현승일·김덕배·이경재·민봉기·윤경식·고홍길·심규철·임인배·유한열·박원홍·서정화·박명환·김운용·박승국·이인기·

정대철·홍준표·박주천·이인제·김기배 의원 발의)

12.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
(강창희 의원 외 52인 발의)

(16시23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韓忠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韓忠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먼저 曹雄奎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 참전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수혜 대상 및 특별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련된 법안 제명·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姜昌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수행기간과 부여받은 계급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로자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보상금을 보상금과 공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안 제명에 보상의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못 했는데 찬성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인데 아까 두 분을 추가하니 154인이 되겠습니다. 반대 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시29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자자치위원회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석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전재희 의원高興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고,

둘째, 법제 업무 및 보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으며,

셋째,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재난 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재해 또는 재난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관련 제반사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발급 시 공인인증 사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에서의 실명제 도입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을 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덕규 의원 김영춘 의원 이창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특별사면, 복직 등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망,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금액과 보상 결정당시의 월금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관련 상이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

은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행정자치위원장)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16시38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3일 제244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각각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46인 중 찬성 146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林仁培 議員 의석에서 - 종료를 너무 빨리 하십니다. 찬성으로 해 주세요.)

그래요? 林仁培 의원님을 찬성으로 추가해서 회의록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락기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락기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47인 중 찬성 146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인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 · 김용학 · 이낙연 · 김옥두 · 정철기 · 유재규 · 김경재 · 강운태 · 김경천 · 김홍일 · 송석찬 · 천용택 · 김태홍 · 전갑길 · 정우택 · 이주영 · 이정일 · 이훈평 · 이원성 · 김상현 · 신경식 · 이원창 · 배기운 · 이성현 · 박주선 의원 발의)

1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박병운 의

원 대표발의)(박병운 · 한화갑 · 홍재형 · 허운나 · 정대철 · 추미애 · 정장선 · 김덕규 · 김만제 · 박세환 · 윤경식 · 이원형 · 박주천 · 김정숙 · 정재문 · 이원창 · 김경재 · 이낙연 · 정세균 · 장영달 · 김성호 · 고진부 · 김태홍 · 배기운 · 김원웅 · 신현태 · 박관용 · 유홍수 · 서정화 · 서청원 · 조용규 · 정인봉 · 송석찬 · 정동채 · 박용호 · 천정배 · 정철기 · 송영길 · 심규철 · 권오을 · 정병국 · 안영근 · 김용학 · 박명환 · 정창화 · 도종이 · 최용규 · 김방림 · 설훈 · 정동영 · 김충조 · 이훈평 · 윤철상 · 이인제 · 김광원 · 김태호 · 임진출 · 신영균 · 박시균 · 이상득 · 김용갑 · 권기술 · 전갑길 · 강운태 · 이정일 · 김경천 · 김옥두 · 송훈석 · 이창복 · 최영희 · 박희태 · 정문화 · 이병석 · 민봉기 · 박상규 · 이승철 · 원희룡 · 이상배 · 임종석 · 김희선 · 김윤식 · 남궁석 · 설송웅 · 김화중 · 이상수 · 안동선 · 이상희 · 허태열 · 박원홍 · 박종희 · 조성준 · 김명섭 · 배기선 · 박종우 · 신기남 · 강현욱 · 유재건 · 김영배 · 원철희 · 함석재 · 조희욱 · 송광호 · 오장섭 · 강숙자 · 문희상 · 광치영 · 이재정 · 박광태 · 이호웅 · 원유철 · 전용학 · 조배숙 · 장성원 · 김효석 · 조한천 · 김성순 · 김기재 · 정균환 · 김운용 · 박상희 · 김영진 · 김원기 · 김홍일 · 이미경 · 이강래 · 김태식 · 김근태 · 박양수 · 이재선 · 최돈웅 · 최명현 · 장재식 · 함승희 · 강성구 · 장정언 · 조정무 · 박병석 · 임채정 · 강신성일 의원 발의)

2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

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16시41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전용학**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은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지급신청 기간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관련 신청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만 동 신청기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동년 3월 31일까지”를 “동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직능인의 신지식 및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정보·교육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능인경제활동촉진위원회를 두며,

셋째,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구현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로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가가 직능단체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보조금, 세제 지원 등 국가의 직능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과 행정자치부가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능인 경제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51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 작전수행 중 공비도벌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둘째,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셋째,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거창사건 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그러면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
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밖에 있는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136인이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없
습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인, 기권 2인
으로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
조치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인, 기권 4인
으로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

치법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거창에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기쁘시겠습니다.

2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6시51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金敬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委員長代理 金敬天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金敬天 의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金敬天 의원 등 10인과 尹榮卓
의원 외 9인이 각각 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되 학원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개인과
외교습행위의 고액과외화 및 시설과외화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 및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2건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발
의되었으나, 각 법률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건전하게 교습행
위를 하고 있는 소규모·생계형 개인과외교습자
들에게까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바,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여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
를 살리는 동시에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
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
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규정과 벌칙규정을 법률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를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개인과외교습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9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권영세·김영춘·김진재·김형오·박근혜·박상희·박진·박헌기·오영식·이종걸 의원 발의)

23.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57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22항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朴相熙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李祥義 의원께서 각별한 열의를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金台植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용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취업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취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및 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으로 수정하여 법안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 삭제했습니다.

셋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대한 설립근거와 출연에 관한 규정은 출연기관을 증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대체복무제도의 추진에 관한 조항과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자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을 확충하고 일정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회의를 두는 등 자문회의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문회의의 위촉위원 중에서 자문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심사보고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국가기술공황예방을 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 만장일치로 국가기술공황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尹漢道 의원, 투표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 만장일치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7시0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委員長代理 鄭鎭碩 문화관광위원회 鄭鎭碩 의원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3년 9월 22일 高興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2003년 10월 18일 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2003년 11월 13일 목요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역신문의 정의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문화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지역신문은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으로 하고 편집 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 만장일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정범구 의원 외 12인 발의)

(17시0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5항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범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2003년 11월 2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2월 23일 동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을 합의하여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법안의 통과가 지체될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의장이 부득이하게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12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건의 심사와 관련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중간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중간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러면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범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일산갑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은 새로운 매체와 방송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추어 이번 방송법개정안에서는 방송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과 통신의 급격한 융합과 디지털시대의 방송 환경을 규정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방송이라든가

멀티미디어방송 등 신규 방송 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도 미흡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데이터방송의 정의규정을 신설해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방송의 경우 현재 위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승인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해서 방송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방송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장비의 유희화 등 관련 업계의 투자손실이 커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환경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를 이미 정비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미흡하나마 지난 수년 동안에 방송위원회 및 방송학계의 연구 성과와 각국의 방송법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문화관광위원회와 방송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지난 2월 23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조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수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각 언론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 71개 사가 이 법안 지연으로 인하여 도산이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개정법률안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방

송환경의 현실에 맞게 현행 방송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沈載權·김성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議員 서울 강동을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하신 정범구 의원 발의의 소위 DMB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동안 총 12건의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3당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KBS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문광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오늘 전체 개정안 내용을 포괄하는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우선 DMB법안만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DMB법 대안을 포함해서 시급한 민생 관련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3당 간사 간에 모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의 합의 결과,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효과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국산 애니메이션의 신규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케이블TV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및 외국 자본의 소유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넷째,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 기타 방송광고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수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의 없이 합의한 내용들로서 의장께서 상정하신 DMB법에 대한 보완과 함께 관련 산업계와 방송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생법안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放送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修正案(심재권·김성호 의원 외 66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이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한 법안입니다마는, 국회법 절차상 이런 형식으로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沈載權·김성호 의원 외 66인이 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범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 9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임채정 의원 대표발의)(임채정·강봉균·강운태·김명섭·김성순·김성호·김운용·김희선·박상희·박주선·송영길·오영식·유시민·유재건·이종걸·이창복·이호웅·이훈평·장재식·정대철·천정배·허운나·홍재형 의원 발의)

(17시18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仁基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仁基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법안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 후 7년간 총 8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1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

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59인 중 찬성 159인, 만장일치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代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8.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택기 의원 대표발의)(김택기·이낙연·배기운·이근진·김태홍·안영근·정갑윤·심재권·장성원·최영희·정대철·권태망·박병운·유재건·이윤성·조성준·박명환·박상규 의원 발의)

29.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2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7항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신현태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현행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리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규정을 법에 통합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연료첨가제 제조·판매 시 이를 품질기준·판매방법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료첨가제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

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 지역을 일원화하여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되, 국제물류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타 제조업종도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산업자원위원장)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自由貿易地域의 지정등에 관한法律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57인 중 찬성 157인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5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58인 중 찬성 158인, 만장일치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잠시 문서 관계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赦免法中改正法律案(홍사덕 의원 발의)(홍사덕 의원 외 146인 발의)

6. 個人채무자회생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7시3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5항 사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金容鈞 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합천·산청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먼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인하여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 결과, 첫째, 형의 확정 이후 1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은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죄 또는 형을 정하여 행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의 명단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상섭 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예관청원,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조배숙 의원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예관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과도한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10억 원 이하의 담보채무자, 5억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 권리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을 가지도록 하였고,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으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赦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洪恩德 한나라당 총무께서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로만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주 26일 법사위에 회부된 본 사면법 개정

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 제79조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사면 외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권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제8조와 제9조를 다시 수정해서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복권, 그리고 특별사면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죄명 및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면법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견이고 헌법 제79조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명백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사법적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률안은 입법부가 사면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 제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 법률안입니다.

둘째, 입법 미비로 인한 졸속입법의 전형입니다.

오늘 법사위 수정안을 통해서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일반감형, 복권의 명단과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어떻게 대통령 사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회가 정파적인 이유나 업무 해태로 인하여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간주규정이나 보충적인 사면권 실행규정이 없어 사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게 됩니다. 더불어 국회의 의견을 내는 절차적 규정 등도 전혀 언급이 없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16대 국회의 마지막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즐겨 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그 도가 지나쳐……

(○윤두환 의원 의석에서 -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마저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사면권을 국회 다수당의 수중 아래 두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독재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의석에서 - 여당만 따라가는 철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장내 소란)

윤두환 의원! 발언 순서 얻어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한나라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세력의 횡포이며, 이는 국회 내에서의 독재행위로서 국민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의석에서 - 받아 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결코 다수 한나라당의 통제에 의해서 견제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헌적인 이 사면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16대 국회의 위상을 찾아 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른 토론자 신청이 없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55인, 기권 3
인으로 사면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 만장일치로 개인채
무자회생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7시4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0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명섭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건강기
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우리 위원회
가 심사한 결과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동 청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
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
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
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이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
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으로 건강
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
별법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강봉
균·강숙자·강운태·강인섭·고진부·구종
태·권기술·권영세·권오을·권태망·김광
원·김경재·김경천·김근태·김기재·김덕
규·김덕룡·김덕배·김락기·김명섭·김부
겸·김상현·김성순·김성호·김영환·김영
춘·김옥두·김운용·김윤식·김원기·김원
웅·김정부·김찬우·김충조·김태홍·김택
기·김학송·김홍신·김홍일·김효석·김황
식·남경필·남궁석·도종이·문석호·박명
환·박병석·박병운·박상천·박상희·박승
국·박양수·박인상·박종근·박종우·박종
희·박주선·박주천·배기선·배기운·서상
섭·설송웅·설훈·송광호·송석찬·송영길
·송훈석·신계륜·신기남·심규철·심재권
·안경률·안상수·안영근·오경훈·오세훈
·오영식·오장섭·원유철·유시민·유용태
·유재건·유재규·유한열·윤경식·윤여준
·윤영탁·윤철상·윤한도·이강래·이근진
·이낙연·이미경·이부영·이병석·이상수
·이성현·이승철·이완구·이용삼·이우재
·이원성·이원창·이윤수·이재정·이정일
·이종걸·이창복·이해봉·이해찬·이협·**

이호웅·이훈평·이희규·임종석·임진출·
 임채정·장성원·장영달·장재식·장태완·
 전갑길·전용학·정갑윤·정균환·정대철·
 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병국·정세균·
 정의화·정장선·정철기·조배숙·조용규·
 조성준·조정무·조재환·조한천·천용택·
 천정배·최명헌·최선영·최영희·최용규·
 최재승·추미애·한화갑·함승희·허운나·
 현경대·홍재형·안동선 의원 발의)

(17시4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1항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대리 김희선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3년 12월 16일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2월 2일 법안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저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안·의결 절차를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비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 둬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

의 관련 기관과 단체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및 유형을 보다 명료하고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가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사료 편찬 전에 출판물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될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조사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을 보다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각호별로 2인 이상으로 균등히 배분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 및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토록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보호 및 이의신청 그리고 위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
법안 심사보고서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6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10
인으로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
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다시 말
하면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법안들
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먼저 처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35.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
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
원장 제출)

(17시5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5항 남북이산가족의
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
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曹雄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曹雄奎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의 曹雄奎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
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한 주문의 본문만 낭
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
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
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
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
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
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
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
을 다짐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그러면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
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남궁석 의원 찬성입니까?

제석의원 156인 중 찬성 156인, 만장일치로 남
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
를촉구하는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6대 문을 닫으면서 이런 중요한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
가족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생사 확인, 주소 확인, 서신 왕래, 면회, 그
리고 재결합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생기고 벌써 네 번째 똑같은 결의안을 오늘 통과
시킨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다시
말하면 선거법과 관련된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
다마는, 지금 정개특위에서 제주도에 선거구를 3

개 두는 문제, 또 석패율 등 아주 난상토의를 또 시작했습니다. 쉽게 회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자정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을 자시고 9시경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또 회의정족수가 안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시간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간 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마는, 9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10시도 좋고 11시 3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한다는 약속하에서 시간을 정합시다.

그러면 9시에 하고 저 밖에 커피를 두 배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커피…… 9시로 일단 하겠습니다.

(「10시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자, 9시나 10시나 그게 그겁니다.

오늘 마지막 국회, 여러분! 한 시간 그것 좀 소비하면 어떻습니까? 9시에—세 시간이니까 집에 갔다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출석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3시23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전부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재석 버튼을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빨리 좀 눌러 주세요. 빨리 좌석의 재석 버튼을 누르세요.

정감윤 의원, 빨리 와서 버튼을 누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3.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막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사위원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 李在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李在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치 관계 법을 개정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고,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선거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등 방송매체에 의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였으며, 이와 같이 선거방송 등이 확대됨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과 달리 당적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4일로 단축하였고, 선거일을 현행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었으며, 재·보궐선거일을 현행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고, 투표시간도 2시간 연장하여 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후보자 등록 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체납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이를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존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보전 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반환 또는 보전토록 하던 것을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또는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비후보자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인쇄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키로 하였고,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토록 하였으며, 1회 20만 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상시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되는 형의 요건을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하고, 연대책임 대상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후보자와 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한 자를 포함하며, 당선무효 되는 선거범죄 유형에 회계보고서의 허위 기재, 허위누락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빨리 읽어요」 하는 의원 있음)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열네 번째,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 전 의원 직을 사직하는 경우에도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회 100만 원 이상의 기부와 50만 원 이상 지출은 수표, 예금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위하여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당에 대한 입·탈당의 방법으로 현행의 서면에 의한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탈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의기관의 결의에 있어서도 전자서명을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투·개표 사무 등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2건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덕규 의원 등 33인과 梁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 3분 이상을 제안설명을 하면 처리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덕규 의원 먼저 나와서 3분 이내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3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후보자의 학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박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확인도 없이 국내에서, 그것도 선거 때 수월하게 통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선거에서 가짜 대학의 가짜 박사학위증이 통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규정은 돈만 받으면 졸업장과 학위증을 남발하는 외국의 가짜 대학들이 수없이 많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술한 가짜 박사 논란을 야기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심지어는 재판정까지 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래서 동법 제64조, 그러니까 선전벽보에 관한 1항과 동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1항의 규정 중에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라고 하는 이 간결한 문구를 “해당 국가의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이라고 바꾸어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제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후보자가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대학에서 받은 학력이나 또는 취득한 학위를 선전벽보에 게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표할 경우에 이를 위법행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짜 대학에서 발부한 가짜 박사학위증은 우리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국외 유학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없이 졸업장과 학위를 판매하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대학이 무려 7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들은 학력을 공인하는 기관들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받은 학위는 절대 학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만 안 하시면 저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역행해 가지고 학력증명서만 떼다 주면 학위를 받은 것처럼 인

정하는, 오히려 가짜 학위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가짜 학위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얘기를 들어서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김덕규·천용택·임채정·이우재·송석찬·유재건·이창복·김원웅·김부겸·고진부·하순봉·배기선·장광근·정동채·박병석·정세균·이강래·박종근·정진석·오정훈·임종석·김영춘·김명섭·김희선·이부영·정창화·이종걸·최병국·박헌기·전갑길·박상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다음은 梁承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3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富 議員 새천년민주당 梁承富 의원입니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별표 중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가 그동안의 선거구 획정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번 개정안을 보면, 인구수 11만 7932명으로 통폐합 대상이 아닌 완주군·임실군 선거구가 나뉘어 완주군은 김제시 선거구와 통합되고, 임실군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 선거구에 편입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수 8만 6636명으로 통폐합 대상인 무주군·진안군·장수군 선거구는 제 형태를 유지하고, 통폐합 대상이 아닌 완주군·임실군 선거구는 해체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통폐합 대상이 아닌 선거구도 분리해서 다른 선거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통합되는 완주군은 전주시를 가운데 두고 서쪽과 동쪽에 위치해 각각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 선거구로 하기에는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이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기본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해야만 지역 대표성과 주민 대표성을 연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며, 주민의 표심이 제대로 투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선거구 중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순창군 선거구를 남원시·순창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로, 김제시·완주군 선거구를 김제시 선거구로,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를 완주군·임실군·진안군 선거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때에만 조정 대상 선거구 간의 인구비도 비슷해져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양승부 의원 외 60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리고 이 선거법 관련해서 토론 신청이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3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金學元 의원 나와서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본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그동안에 공직선거법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까지 심의해 왔습니다.

개개 내용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사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날짜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찬동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헌 위법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저희 당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원 30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3당이 합의해서 거의 통과가 확실시돼 있는 이 시점에서 부득이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서 의석 수를 3석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위헌 위법 문제 그리고 공직선거법 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 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면서 제주도에 관해서는 3석으로 유지해 주도록 권고하는 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의 제주도에 있는 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3 대 1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으로서 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제주시의 일부를 떼어서 북제주에 붙이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직선거법 25조의 제1항에 구·시군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구·시군에 넘기는 게리맨더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제주를 3개의 지역구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2개의 지역구로 획정한 다음 우리 국회에 보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개정안에는 공선법 22조1항의 광역시·도에 최소 3석 이상을 두도록 하고 이 규정에 한해서만 일부를 떼서 다른 시·군으로 넘길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조1항을 원래 만들 때 이와 같은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든 이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려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이 규정의 악례가 남게 되면 차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완주군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전주시 일부 군을 떼다든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악례가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것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획정위원장은 이를 불법적인 것은 무시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획정위원회의 획정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공선법 24조1항에 위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인 개정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역사적인 오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층정에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두환 의원 꼭 토론하셔야 되겠습니까? 3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치개혁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마주 앉으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바꿔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면 도둑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노골적인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체도의 개혁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정치개혁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관련 법안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가 얼마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당리당락을 떠나 생각해 봅시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을 242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구 의원 증원에 따라 비례대표의원도 증원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의원 정수 11석을 늘려 의원 정수 299명으로 오늘 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 국회 의원 정수를 늘렸습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린 것에 대해 국민 모두는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부터 늘린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자당의 이해득실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무원칙하고 당리당락에 따른 눈치 보기의 결과인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린 것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구 15석 늘린 데 이어서 또다시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정수를 273명 그대로 동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정세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안 주십니까?)

지금 신상발언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선거구 획정은 표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 말 들어 보세요.

공직법 제24조를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국회는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의사를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 이것은 표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서 수정안을 낼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기 당 소속 의원에게만 돌렸다가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장 허가 없이 이것을 모두에게 배포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주의를 방금 주었습니다.

(○정세균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좀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이제 와서 표결 선언하고 난 뒤에 신상발언을 달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장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은 표결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를 주었잖아요.

(「그 주의 준 정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여기서 10분도 안 돼서 선거구를 변경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의장!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선거구획정안이 이렇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하듯이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내가 적법하게 처리할 테니까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하세요. 이것 적법하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의장님! 안 돼요. 이 사안은 안 된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개의 수정안이 각각 서로 다른 조항에 대한 수정내

용을 담고 있으므로 먼저 표결하는 한 개의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한 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한 번 더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공직법 제24조의 정신은, 분명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른 민간인으로 구성했느냐 하면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전부다 유념하셔서 이 수정안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한나라당 원내총무 명의로 모든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배포물을 돌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의 허가 없이는 이런 것 배포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 이것 전부 다 회수해요.

(「의장님,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선거구획정위에서 한 것을 10분도 안 되어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제 7분 남았는데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세균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의장 직권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임시국회 하더라도 표결할 수가 없다니깐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梁承富 의원 외 6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하고 틀린다고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법률 검토 끝났습니다. 법률 검토가 끝났단니까요.

(○정세균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현재 신상발언 줄 수 있는 절차가 안 됩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정회하시고 임시회를 여셔야 된단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단니까요. 다른 것 하고 틀리잖아요. 의장님,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이렇게 하는 것 보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수정안을 못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선거구만 따로 내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안을……」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안 하실 생각이면 투표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것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국회운영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완전히 사기치는 것이지 무슨 국회가 이런 게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洪思德 의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정안 나온 것 어떻게 의장이 안 받습니까? 들어가세요. 내가 얘기할 테니 들어가세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가요. 내 얘기를 들으세요. 들어가야 내가 얘기합니다.

각당 총무들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장내 소란)

이러시면 의장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절차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총무들 간에 의논하라니까……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12시 지나면 자동유회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돌린 것 다 보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대한민국에 당신 선거구 하나

밖에 없나? 내 얘기를 들어 봐요. 법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될 때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안을 내면 의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서로 합의해 놓고 그 성실성을 파괴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물을 얘기지 회의 진행하는 의장에게 이를 항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의장은 국회를 지도하실 직위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협상은 왜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데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협상의 주체입니까? 물어보세요, 다른 데 가서.

(「의장님, 아무리 막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 들어가세요.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들, 품위를 지키세요, 품위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95인, 반대 40인, 기권 29인으로서……

(「저희 투표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여러분들이 떠드니까 직원들이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이 김덕규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투표를 한 것입니까, 梁承富 의원에 대해서 투표를……

(「梁承富 의원이 낸 안이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 확인해 봐요.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교섭단체 대표들과 모여서 다시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월3일 00시06분 산회)

.....
【결의안】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3.

제 안 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과거의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빚어진 단절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희생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이 20세기 냉전의 잔재로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남북간에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의 상봉, 18,939명의 생사·주소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상호왕래 및 재결합 등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간에 흩어진 수백만 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 확인이 가장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며,

지난 1991년 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 1998년 12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 및 2000년 6월의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 등 대한민국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채택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을 위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20세기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 초래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분단은 전 민족적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서로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정도임.

2003년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수는 122,855명이며 신청자 1인당 찾고자 하는 평균가족수가 4~5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 이들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한 이산가족 규모는 약 60만명 정도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나, 가족찾기를 포기한 이산가족의 경우 및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찾기 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됨.

남북당국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이 상봉하고 18,939명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가족상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다수 이산가족들에게는 가족의 생사확인조차도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오히려 허탈감만 더해 주고 있음. 특히 가족의 생사확인에는 이산가족들의 가장 1차적인 염원으로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남북당국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 미흡 및 북한측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임.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의 경우에도 희망자에 비해 그 규모 및 횟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왕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남북당국이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확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72인)

강 봉 균	강 속 자	고 진 부	구 종 태
김 경 재	김 근 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원 용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홍 일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문 석 호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인 상
박 종 완	배 기 선	설 송 웅	설 훈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계 룡	신 기 남
심 재 권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윤 철 상
이 강 래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부 영
이 우 재	이 종 길	이 창 북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웅	이 희 규	임 종 석
임 채 정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장 선
정 철 기	조 성 준	조 재 환	최 용 규
최 재 승	한 충 수	한 화 갑	홍 재 형

반대의의원(96인)

강 성 구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흥 길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재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영 선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남 경 필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박 근 혜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원 홍	박 종 근	박 종 우	박 종 희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서 병 수
서 정 화	송 광 호	송 병 대	신 현 태
안 동 선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원 유 철	원 희 룡	유 한 열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경 재	이 방 호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해 구 이 해 봉 임 인 배
 임 진 출 임 태 희 전 용 원 전 용 학
 정 갑 윤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용 규 조 희 옥 최 명 현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연 희 하 순 봉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홍 문 중 홍 사 덕

기권의원(7인)
 김 기 춘 박 관 용 송 훈 석 심 재 철
 윤 경 식 황 우 여 황 창 주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희 옥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투표의원(174인)

찬성의원(174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홍 일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희 박 헌 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중 결 이 주 영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76인)

찬성의원(171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희
 박 헌 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이 회 규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희 욱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회 허 태 열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1인)

임 인 배

기권의원(4인)

김 영 춘 정 형 근 천 정 배 최 용 규
 (김옥두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76인, 찬성의원 171인임)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동 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오 경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승 회 허 태 열 홍 문 중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창 주

기권의원(1인)

최 명 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71인)

강 봉 균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형 오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금 자 박 병 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회 박 헌 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 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투표의원(176인)

찬성의원(172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형 오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박 관 용 박 금 자
 박 병 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회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석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중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기권의원(4인)
 김영선 문석호 박헌기 이상배

김형오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헌기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석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동선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현경대	홍문중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5인)

김황식 박종희 박혁규 신현태
 이종걸

기권의원(2인)

안상수 전재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투표의원(169인)

찬성의원(162인)

강봉균	강숙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65인)

찬성의원(165인)

강봉균	강숙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상현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동욱	김탁기	김명섭	김무성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형오	김홍일	김황식	나오연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김종하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금자	김택기	김형오	김홍일	김황식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종우	박현기	박혁규	배기선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인상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박종완	박종우	박현기	박혁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배기선	설송웅	설훈	송광호
심재권	심재철	안상수	안상현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유시민	심재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원유철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유홍수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만섭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용삼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종걸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재선	이재창	이주영	이해구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영달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장재식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세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명헌	조희욱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문종	홍재형	황우여	

반대의원(1인)

정 문화

(김경재·심재철·이용삼 의원 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56인, 찬성의원 155인임)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156인)

찬성의원(155인)

강봉균	강숙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68인)

찬성의원(168인)

강봉균	강속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강고진	강고흥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명헌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58인)

찬성의원(156인)

강봉균	강속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강고진	강고흥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부겸
김상현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오경훈
원유철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정무	조성준
정세균	정의화	정진석	조웅규
정철기	조부영	조정무	조한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기권의원(2인)

박상규 심재철

○住民登録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3인)

찬성의원(153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현 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영 달	장 재 식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53인)

찬성의원(150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현 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인 기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주 영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희 규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채 정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이 회 규	장 영 달	장 재 식	임 채 정
전 용 학	장 광 근	장 영 달	전 갑 길
정 동 채	전 용 학	전 재 희	정 동 영
정 세 균	정 범 구	정 병 국	정 동 채
정 진 석	정 철 기	조 부 영	정 세 균
조 부 영	조 재 환	조정 무	조 성 준
조 연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조 한 천
함 석 재	한 충 수	함 석 재	조 희 욱
홍 재 형	황 우 여	현 경 대	최 재 승
		홍 문 중	홍 문 중

반대의원(1인)

김 광 원

기권의원(2인)

정갑윤 정문화
(권철현·김홍일·이희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53인, 찬성의원 150인임)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46인)

찬성의원(146인)

강봉균	강속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철현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방림	김부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오경훈	원유철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승철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영달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진석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병국	최용규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함석재
함석재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투표의원(149인)

찬성의원(148인)

강봉균	강속자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방림
김부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헌기	박혁규	배기선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오경훈	원유철	유시민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희	이승철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영달	전갑길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진석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황우여

기권의원(1인)

조희욱

(김락기·임인배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149인, 찬성의원 148인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안

투표의원(144인)

찬성의원(143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중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홍 일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영 달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의원(1인)

김 광 원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49인)

찬성의원(145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홍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중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홍 일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양 정 규	원 유 철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영 달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의원(2인)

심 재 철 오 경 훈

기권의원(2인)

윤 영 탁 이 원 창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

투표의원(148인)

찬성의원(140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송 응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양 승 부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건
유 한 열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영 달	전 용 학	전 재 회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의원(4인)

김 방 립 박 상 회 설 훈 이 낙 연

기권의원(4인)

김 광 원 박 병 윤 윤 철 상 최 용 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투표의원(149인)

찬성의원(149인)

강 봉 균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국가기술평형예방을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안

투표의원(150인)

찬성의원(150인)

강 봉 균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겹	김 상 현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용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진 훈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중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강 봉 균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방 립	김 부 겹
김 상 현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원 용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진 훈	박 혁 규	배 기 선	서 상 섭
송 영 길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정 규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중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정 무	조 한 천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투표의원(163인)

찬성의원(163인)

강 봉 균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5인)

찬성의원(155인)

권오을	권철현	김경천	김광원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근태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재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탁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명섭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동욱	김탁기	김명섭	김무성
김상현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옥두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학송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김홍일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금자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진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진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박혁규	배기선	서병수	서상섭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서정화	설송웅	설훈	송광호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심재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안영근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심재권	심재철	안대륜	안상수
오경훈	원유철	유용태	유재건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오경훈	원유철	유용태	유재건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유재규	유홍수	윤두환	윤여준
이강래	이낙연	이만섭	이병석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승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부영	이승철	이용삼	이상배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승철	이윤성	이인기	이우재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원창	이주영	이해구	이재창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장영달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장영달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정무	조한천	최명현	최병국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정무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조한천	최명현	최병국	최연희
한충수	함석재	현경대	홍문종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放送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투표의원(169인)

찬성의원(167인)

강봉균	강숙자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기권의원(2인)

김영선 정범구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들의지원에관한 특별법안

투표의원(159인)

찬성의원(159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흥 일	김 황 식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진 석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57인)

찬성의원(157인)

강 봉 균	강 숙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룡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石油事業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7인)

찬성의원(153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회 육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사 덕	홍 재 형

반대의원(1인)

송 영 길

기권의원(3인)

전 재 희 조 용 규 홍 문 종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투표의원(158인)

찬성의원(158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회 육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赦免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63인)

찬성의원(106인)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제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무성
김병호	김영선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학송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종우	박진	박혁규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송광호	송병대
신영국	신현태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제	이만섭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주영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창화	정형근	조정무
조희욱	최병국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황우여		

반대의원(55인)

강봉균	강숙자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명섭
김방림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남궁석	문석호
박금자	박병석	박인상	박종완
배기선	배기운	설송웅	설훈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양승부
유재건	윤철상	이강래	이낙연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세균
정철기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최용규	한충수	홍재형	

기권의원(2인)

안상현 최재승

(김학송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의원 163인, 기권의원 2인임)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투표의원(164인)

찬성의원(164인)

강봉균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김경제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학송	김황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진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유철	유재건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만섭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우재	이원창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용규	조재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욱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조 정 무 조 한 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허 태 열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의원(1인)

박 상 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163인)

찬성의원(162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웅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웅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승 철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웅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재 환

○일제강점하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투표의원(163인)

찬성의원(151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근 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웅
 김 정 부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웅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윤 경 식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웅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오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승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재 식
한 충 수	함 석 재	허 태 열	홍 문 중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반대의원(2인)				정 병 국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김 광 원	이 강 두			조 성 준	조 오 규	조 재 환	조 정 무
기권의원(10인)				조 한 천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재 승
김 기 춘	김 동 욱	박 병 윤	박 상 희	하 순 봉	한 충 수	함 석 재	허 태 열
박 진	양 승 부	윤 두 환	이 상 배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정 문 화	하 순 봉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
시를촉구하는결의안

투표의원(156인)

찬성의원(156인)

강 봉 균	강 속 자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홍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욱 두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중 하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진	박 혁 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송 광 호	송 병 대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원 유 철	유 용 태	유 재 건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승 철
이 용 삼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호 응

○出席議員(231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姜 雲 太	姜 仁 燮	姜 재 섭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권 영 세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김 기 재	金 淇 春	김 덕 규
金 德 龍	김 덕 배	金 東 旭	김 락 기
김 명 섭	金 武 星	金 芳 林	金 秉 浩
김 부 겸	김 상 현	金 聖 順	김 성 조
김 성 호	金 映 宣	김 영 춘	김 영 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元 吉	김 원 응	金 政 夫
김 정 숙	金 鍾 泌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鎮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김 태 홍	김 택 기	金 鶴 松	金 學 元
김 형 오	김 흥 일	金 晃 植	金 孝 錫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都 鍾 伊	孟 亨 奎	목 요 상	문 석 호
朴 寬 用	朴 權 惠	朴 錦 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朴 相 千	박 相 熙
朴 世 煥	박 시 균	朴 源 弘	박 仁 相
朴 鍾 根	朴 鍾 浣	朴 宗 雨	박 종 희
박 진	박 창 달	朴 憲 基	박 혁 규
배 기 선	裴 奇 雲	서 병 수	서 상 섭
徐 廷 和	설 송 응	薛 勳 勳	손 희 정
송 광 호	宋 丙 大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계 룬	沈 載 權	申 榮 國
신 현 태	심 규 철	沈 載 權	심 재 철
안 대 룬	安 東 善	安 商 守	安 相 賢
안 영 근	안 택 수	安 梁 承	安 梁 正
嚴 虎 聲	오 경 훈	劉 世 泰	元 裕 哲
원 희 룡	유 시 민	劉 容 泰	유 재 건
柳 在 珪	柳 漢 烈	柳 興 洙	윤 경 식
윤 두 환	柳 尹 汝	柳 榮 卓	尹 鐵 相

尹 漢 道	李 康 斗	이 강 래	李 敬 在
李 根 鎭	이 낙 연	李 萬 燮	李 方 鎬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李 相 培
李 祥 羲	이 성 현	이 승 철	李 良 熙
李 完 九	李 龍 三	이 우 재	李 元 昌
李 允 盛	李 允 洙	李 仁 基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昌	이 중 걸	李 柱 榮
이 창 복	李 漢 東	李 海 龜	이 해 봉
이 해 찬	李 協	이 호 웅	이 희 규
林 仁 培	임 종 석	林 鎭 出	임 채 정
任 太 熙	張 光 根	張 誠 源	장 영 달
張 在 植	全 甲 吉	田 瑢 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鄭 均 桓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鄭 宇 澤	정 의 화
정 장 선	鄭 鎭 碩	정 창 화	鄭 哲 基
鄭 亨 根	趙 富 英	조 성 준	趙 舜 衡
曹 雄 奎	趙 在 煥	조 정 무	趙 漢 天
曹 喜 旭	천 용 택	천 정 배	崔 明 憲
崔 炳 國	崔 秉 烈	崔 鉛 熙	최 용 규
최 재 승	秋 美 愛	河 舜 鳳	韓 昇 洙
韓 忠 洙	韓 和 甲	咸 錫 宰	咸 承 熙
許 泰 烈	玄 敬 大	홍 문 중	洪 思 德
홍 재 형	황 우 여	黃 昌 柱	

○出張議員(2人)

李 嬾 淑 崔 榮 熙

○請暇議員(7人)

朴 鍾 雄	朴 熺 太	白 承 弘	이 규 택
이 원 성	李 正 一	張 泰 玩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高 建
부 총 리	李 憲 宰
재 정 경 제 부 장 관	康 錦 實
법 무 부 장 관	許 成 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吳 明
과 학 기 술 부 장 관	李 滄 東
문 화 관 광 부 장 관	許 祥 萬
농 립 부 장 관	金 花 中
보 건 복 지 부 장 관	

○出席政府委員

외 교 통 상 부 차 관	崔 英 鎭
국 방 부 차 관	俞 普 善
문 화 관 광 부 차 관	吳 志 哲
산 업 자 원 부 차 관	金 七 斗
여 성 부 차 관	安 載 憲

【報告事項】

○議案提出

2003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결산승인안

(2월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2003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2월27일 한국방송공사 제출)

이상 2건 2월2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
원에관한법률안(대안)

(2월27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
正法律案(代案)

(2월27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월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
를촉구하는결의안

(3월2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
案

(3월2일 김덕규·천용택·임채정·이우재·송
석찬·유재건·이창복·김원웅·김부겸·고
진부·하순봉·배기선·장광근·정동채·박
병석·정세균·이강래·박종근·정진석·오
경훈·임종석·김영춘·김명섭·김희선·이
부영·정창화·이종걸·최병국·박현기·전
갑길·박상규·김택기·김태홍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
案

(3월2일 양승부 의원 외 60인 발의)

放送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3월2일 심재권·김성호 의원 외 66인 발의)

○議案審査

赦免法中改正法律案(홍사덕 의원 발의)

(1월30일 홍사덕 의원 외 146인 발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발의)

(2003년11월5일 천정배 의원 외 46인 발의)

(이상 2건 수정의결)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
충조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9일 김충조·김용학·이낙연·
김옥두·정철기·유재규·김경제·강운태·
김경천·김홍일·송석찬·천용택·김태홍·
전갑길·정우택·이주영·이정일·이훈평·
이원성·김상현·신경식·이원창·배기운·

이성현 · 박주선 의원 발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

(12월1일 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이상 2건 원안의결)

住民登録法中改正法律案

(2003년9월24일 정부 제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박병운 의원 대표 발의)

(2002년2월27일 박병운 · 한화갑 · 홍재형 · 허운나 · 정대철 · 추미애 · 정장선 · 김덕규 · 김만제 · 박세환 · 윤경식 · 이원형 · 박주천 · 김정숙 · 정재문 · 이원창 · 김경재 · 이낙연 · 정세균 · 장영달 · 김성호 · 고진부 · 김태홍 · 배기운 · 김원웅 · 신현태 · 박관용 · 유홍수 · 서정화 · 서청원 · 조용규 · 정인봉 · 송석찬 · 정동채 · 박용호 · 천정배 · 정철기 · 송영길 · 심규철 · 권오을 · 정병국 · 안영근 · 김용학 · 박명환 · 정창화 · 도종이 · 최용규 · 김방림 · 설훈 · 정동영 · 김충조 · 이훈평 · 윤철상 · 이인제 · 김광원 · 김태호 · 임진출 · 신영균 · 박시균 · 이상득 · 김용갑 · 권기술 · 전갑길 · 강운태 · 이정일 · 김경천 · 김옥두 · 송훈석 · 이창복 · 최영희 · 박희태 · 정문화 · 이병석 · 민봉기 · 박종희 · 이승철 · 원희룡 · 이상배 · 임종석 · 김희선 · 김윤식 · 남궁석 · 설송웅 · 김화중 · 이상수 · 안동선 · 이상희 · 허태열 · 박원홍 · 조성준 · 김명섭 · 배기선 · 박종우 · 신기남 · 강현욱 · 유재건 · 김영배 · 원철희 · 함석재 · 조희욱 · 송광호 · 오장섭 · 강숙자 · 문희상 · 광치영 · 이재정 · 박광태 · 이호웅 · 원유철 · 전용학 · 조배숙 · 장성원 · 김효석 · 조한천 · 김성순 · 김기재 · 정균환 · 김운용 · 박상희 · 김영진 · 김원기 · 김홍일 · 이미경 · 이강래 · 김태식 · 김근태 · 박양수 · 이재선 · 최돈웅 · 최명헌 · 장재식 · 함승희 · 강성구 · 장정언 · 조정무 · 박병석 · 임채정 · 박상규 · 강신성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의결)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덕규 의원 대표발의)

(2001년4월20일 김덕규 · 장영달 · 오세훈 · 김원웅 · 안영근 · 김희선 · 김태홍 · 전갑길 · 최용규 · 심규섭 · 김성호 · 전용학 · 김근태 · 김운용 · 안상수 · 서상섭 · 정철기 · 임종석 · 김

호일 · 이재정 · 김영진 · 김충조 · 이근진 · 이창복 · 김경천 · 이낙연 · 현승일 · 이재오 · 김용학 · 박관용 · 설훈 · 이주영 · 한화갑 · 조용규 · 이부영 · 정재문 · 이협 · 김태식 · 김홍신 · 김화중 · 김덕룡 · 이규택 · 권기술 · 김영배 · 송광호 · 조부영 · 정병국 · 심재권 · 정장선 · 손태인 의원 발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춘 의원 발의)

(2001년11월9일 김영춘 의원 외 35인 발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창복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24일 이창복 · 배기선 · 이호웅 · 임종석 · 김영배 · 정세균 · 박인상 · 김경천 · 신계륜 · 김근태 · 김희선 · 원유철 · 정동영 · 송영길 · 문희상 · 박상규 · 김성호 · 조재환 · 송석찬 · 박용호 · 김성순 · 김원기 · 설훈 · 임채정 · 이미경 · 이강래 · 이재정 · 이상수 · 신기남 · 장영달 · 서상섭 · 전갑길 · 손학규 · 김홍신 · 김원웅 · 유재건 · 김방림 · 이부영 · 천정배 · 이훈평 · 김태홍 · 안영근 · 김민석 · 오세훈 · 장성원 · 조성준 · 조한천 · 김옥두 · 김효석 · 김덕룡 · 이인제 · 김윤식 · 이재오 · 정범구 의원 발의)

(이상 3건 대안폐기 의결)

이상 7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14일 김희선 · 강봉균 · 강숙자 · 강운태 · 강인섭 · 고진부 · 구종태 · 권기술 · 권영세 · 권오을 · 권태망 · 김광원 · 김경재 · 김경천 · 김근태 · 김기재 · 김덕규 · 김덕룡 · 김덕배 · 김락기 · 김명섭 · 김부겸 · 김상현 · 김성순 · 김성호 · 김영환 · 김영춘 · 김옥두 · 김운용 · 김윤식 · 김원기 · 김원웅 · 김정부 · 김찬우 · 김충조 · 김태홍 · 김택기 · 김학송 · 김홍신 · 김홍일 · 김효석 · 김황식 · 남경필 · 남궁석 · 도종이 · 문석호 · 박명환 · 박병석 · 박병운 · 박상천 · 박상희 · 박승국 · 박양수 · 박인상 · 박종근 · 박종우 · 박종희 · 박주선 · 박주천 · 배기선 · 배기운 · 서상섭 · 설송웅 · 설훈 · 송광호 · 송석찬 · 송영길 · 송훈석 · 신계륜 · 신기남 · 심규철 · 심재권 · 안경률 · 안상수 · 안영근 · 오경훈 · 오세훈 · 오영식 · 오장섭 · 원유철 · 유시민 · 유용태 · 유재건 · 유재

규·유한열·윤경식·윤여준·윤영탁·윤철상·윤한도·이강래·이근진·이낙연·이미경·이부영·이병석·이상수·이성현·이승철·이완구·이용삼·이우재·이원성·이원창·이윤수·이재정·이정일·이종걸·이창복·이혜봉·이해찬·이협·이호웅·이훈평·이희규·임중석·임진출·임채정·장성원·장영달·장재식·장태완·전갑길·전용학·정갑윤·정균환·정대철·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병국·정세균·정의화·정장선·정철기·조배숙·조용규·조성준·조정무·조재환·조한천·천용택·천정배·최명헌·최선영·최영희·최용규·최재승·추미애·한화갑·함승희·허운나·현경대·홍재형·안동선 의원 발의)

(수정 의결)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위원장 보고

○請願審査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1년11월27일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혜수 외 28인으로부터 조배숙·이연숙·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2003년6월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으로부터 조배숙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3년6월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 권영길 외 2인으로부터 서상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書面質問書提出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일부부지반환에관한질문서

(2월27일 김성조 의원 제출)

김포공항주변항공기소음문제에관한질문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학교냉방기지원에관한질문서

항공기소음에의한TV수신장애문제해결에관한질문서

장애인임대아파트임대료및임대보증금인하요구에관한건의안에관한질문서

(이상 4건 2월27일 오경훈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提出

반미감정확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북한인터넷협력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2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意見書提出

정치관계법및그개정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견

(3월2일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